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생략 ② 주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외에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신청하고 8~12학점을 이수한 자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라고 한다.<개정 2024.5.8.></p> <p>③ 신설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현행 ② 주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외에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신청하고 <u>과정별로 정한 학점을</u> 이수한 자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라고 한다. <개정 2024.5.8.> <개정 2026.4.24.></p> <p>③ <u>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 세부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교과목 운영, 학생지도 등을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/u><신설 2026.4.24.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▪ 과정 책임교수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마이크로디그리의 원활한 운영도모
<p>제3조(개설 및 운영) ① ~ ③ 현행 ④ 신설</p>	<p>제3조(개설 및 운영) ① ~ ③ 현행 ④ <u>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는 학부는 매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.</u><신설 2026.4.24.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MD 운영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대한 책임 명시
<p>제6조(수강지도)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자는 신청 과정 책임교수에게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6조(수강지도)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자는 <u>해당</u> 과정 책임교수에게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6.4.24.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단어 변경

2-2-28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학칙 제37조의2(마이크로디그리)에 의거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마이크로디그리란 급변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융복합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한 최소 단위(micro) 교육과정을 말한다.

② 주전공 및 나노디그리 이외에 개설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신청하고 과정별로 정한 학점을 이수한 자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라고 한다.<개정 2024.5.8., 2026.4.24.>

③ 책임교수는 마이크로디그리 세부 과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교과목 개설, 학생지도 등을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<신설 2026.4.24.>

제3조(개설 및 운영) ① 마이크로디그리 운영에 관한 업무는 교무처에서 관장한다.

②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는 학부는 매학년도 마다 운영목적, 교과 및 비교과, 학기별 개설계획, 허용인원, 과정 책임교수 등이 포함된 [별지 제 1호 서식]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서(교수용)을 교무처장에게 제출하고, 교무처장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25.2.4.>

③ 승인 이후, 과정이 개편될 때에는 입학연도별 이수교과 목록을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<신설 2025.2.4.>

④ 마이크로디그리를 운영하는 학부는 매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.<신설 2026.4.24

제4조(신청 및 허가) ①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자격은 재학기간 내에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 완료할 수 있는 재학생으로 한다.

②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운영학부에 [별지 제2호 서식]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서(학생용)을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운영학부는 신청자를 교무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 <개정 2024.5.8.>

④ 마이크로디그리의 지정 교과목들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수증을 수여하지 않는다.<개정 2025.2.4.>

제5조(이수자 허용인원)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자의 허용인원은 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과정 개설 신청시에 정한다.

제6조(수강지도) 마이크로디그리를 이수하는 자는 해당 과정 책임교수에게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6.4.24.>

제7조(포기) <삭제 2025.2.4.>

제8조(이수 인정) ①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인정은 졸업예정 학기에 실시한다.<개정 2025.2.4.>

② 마이크로디그리 신청자는 신청한 마이크로디그리에서 지정된 교과 및 비교과를 이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25.2.4.>

③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학부는 신청자의 이수 결과를 교무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.<개정 2025.2.4.>

④ 교무처는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인정자에게 [별지 제4호 서식]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수여하고 이를 학위증서 및 졸업증명서에 기재한다.<2025.2.4.>

제9조(기타) 이 규정이 정하는 이외의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본교 학칙을 바탕으로 결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25.2.4.>

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신청서(교수용)

개설과정						
운영목적						
학기별 개설 계획	과목명	이수 구분	학 점	개설시기	비고	
	총 학점					
	비교과 프로그램					
제안						
과정 책임교수			허용인원			

과정 책임교수 : (인)

주관학부 학부장 : (인)

예수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마이크로디그리 신청서(학생용)

1. 신청자 인적사항

소속학부	학년	학번	성명
			(인)

2. 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사항

신청과정	

상기와 같이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이수를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지도교수 : (인)

주관학부 학부장 : (인)

예수대학교 교무처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 <삭제 2025.2.4.>

[별지 제4호 서식]

제 연도-일련번호 호

이 수 증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위 사람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에 의하여
_____ 과정에 해당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
그 역량을 갖추었기에 이를 인정하여 이수증을
수여함.

년 월 일

예 수 대 학 교 총 장